

의안 번호	1382	【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		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9. 6.(목)
- 나. 제출자 : 이효상 의원 외 8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8.(월)

2. 제안이유
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개정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.
- 「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의 명칭과 조문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명칭을 “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” 로 변경함
- 나. 지원 보험료에 “노인장기요양보험료” 를 명시함.(안 제1조)
- 다. 노인세대를 “만 68세” 를 “만65세” 로 하고, “다자녀세대” 정의를 명시함(안 제2조)
- 라. 지원대상에 다자녀세대를 추가함(안 제3조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나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9조(사회보장을 받을 권리)
- 다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5조(운영원칙)
- 라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(협약 및 조정)
- 마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기본원칙)

바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사회보장기본법」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
 조례 제명을 「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로 하고
 노인세대를 노인연령 기준에 맞게 만65세 이상으로 하고,
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를 추가로 정하는 것임.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큰 거 법 규

사회보장기본법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회보장을 받을 권리)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

4 (제201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보장급여를 받을 권리(이하 "사회보장수급권"이라 한다)를 가진다.

제25조(운영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.

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,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

제26조(협의 및 조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4조(기본원칙)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

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·투명·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)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,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,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 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(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